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285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세무서장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1. 11. 7.자 부가가치세 2011년 1기분(확정) 109,650,810원, 2012. 2. 1.자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예정) 16,880,160원, 2012.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8.자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확정) 12,651,66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11. 9. 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39,530원, 2013. 1. 8.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35,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3.부터 2012. 2. 15.까지 [redacted]시 B을 사업장 주소로 하는 C의 대표자였고, 2011. 6. 20.부터 2012. 2. 29.까지 [redacted]시 D를 사업장 주소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나. C는 원고 명의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게 2011. 7. 25. 2011년 1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08,283,509원, 2011. 10. 25. 2011년 2기분(예정) 부가가치세 16,729,599원, 2012. 1. 26. 2011년 2기분(확정) 부가가치세 12,497,941원을 각 신고하였다. 위 신고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1. 11. 7. 2011년 1기분(확정) 109,650,810원(가산세 1,367,305원 포함), 2012. 2. 1. 2011년 2기분(예정) 16,880,160원(가산세 150,566원 포함), 2012. 3. 8. 2011년 2기분(확정) 12,651,660원(가산세 153,724원 포함)의 납부를 각 결정·고지(이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2013. 1.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717,795원(가산세 21,375,432원 포함)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결정·고지(이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은 원고에게, 2011. 9. 9.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139,530원(가산세 33,510원 포함), 2013. 1. 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0,635,41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세무서장의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1.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 3, 7호증, 을 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처분 중 본세 부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신고사항에 대한 경정 없이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본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처분 중 가산세 부분,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피고들의 각 처분서를 송달받고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세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에 의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는 등으로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단,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단).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 세법상의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①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1호),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③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3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의 2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경주세무서장, 동대구세무서장이 다음과 같이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처분	송달일	송달내용
[redacted]세무서장	2011. 11. 7.자	2011. 11. 10.	C 사업장으로 송달(등기우편)하여 F(회사동료) 수령
	2012. 2. 1.자	2012. 3. 10.	C 사업장이 2012. 2.경 폐업하여,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대구 동구 G, 103동 102호)로 2회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2012. 3. 8.자	2012. 3. 26.	위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등기우편)하여 원고의 모인 H 수령
[redacted]세무서장	2013. 1. 2.자	2013. 2. 5.	위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2011. 11. 7.자 고지서를 2011. 1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10. 원고의 영업소에 송달하였고, 2012. 2. 1.자 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였으나 2회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지자 2012. 3. 10. 공시송달하였으며, 2012. 3. 8.자 고지서는 2012. 3. 26.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여 동거인인 원고의 모 H가 수령하였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2013. 1. 2.자 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해지자 2013. 2. 5.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위 각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전단,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라 유효하다. 원고는 위 각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부적법하다.

3.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 17. 일본으로 출국한 이래 2008. 8. 7.부터 2008. 9. 23.까지, 2008. 10. 28.부터 2008. 11. 8.까지 한국을 다녀간 것을 제외하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원고의 부(父)인 I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 7. 출국하여, 2008. 8. 7. 입국하였고, 2008. 9. 23. 출국하였다가 2008. 10. 28. 입국하였으며, 2008. 11. 8.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2.경 J과 사이에 [redacted]시 B, K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 13.부터 2013. 1. 12.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대리한 L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2010. 1. 12. 위 임대차계약서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여 위 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혜랑

판사 김정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5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2-13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